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지 방 공 무 원 수 당 등 에 관 한 규 정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·여비 등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고 환수 금액의 2배를 가산징수하고 있으나,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당수령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부당수령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처벌 강화를 위해 부당수령시 가산징수 범위를 5배로 확대하는 한편,

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를 준용하여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외국정부기관”을 “외국정부기관 등”으로, “제10조, 제11조 및 별표 11 제4호”를 “제4조”로 한다.

제15조제8항 전단 중 “2배”를 “5배”로 한다.

제18조의8제1항 중 “2배”를 “5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제8항 및 제18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등 부정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18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) ①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, 국제기구 또는 <u>외국정부기관</u> 에 파견(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)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<u>제10조, 제11조 및 별표 11 제4호</u> 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.		제3조(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) ①----- ----- ----- --- <u>외국정부기관 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4조</u> ----- ----- -----.		
② (생 략)		② (현행과 같음)		
제15조(시간외근무수당) ① ~ ⑦ (생 략)		제15조(시간외근무수당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		
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<u>2배</u> 에 해당하는 금액		⑧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5배</u> -----		

을 가산하여 징수하고,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 ⑨ (생략) 제18조의8(가산징수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⑨ (현행과 같음) 제18조의8(가산징수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5 <u>배</u>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53